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 .
발 의 자	박세채 의원 외 16명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세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 .

발 의 자 : 박세채 · 강승수 · 김근한 · 김낙관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신용하
이명희 · 이상호 · 이정희 · 장미경
장세구 의원(17명)

1. 제안이유

차량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조정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을 확대하여 주차장 추가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의 경형자동차 설치 의무 삭제(안 제8조제6항 삭제)

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개정(안 제14조)

-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최소 기준 변경(30대 이하→20대 이하)

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범위 확대 신설(별표 2)

- 다자녀가정(당초 50% 감면 → 전액 감면)

- 다른 시군에서 구미시로 전입하는 자 [전액감면/1년간(최초1회)]

- 구미시 장학재단 고액기탁자(개인) (전액감면/1년간)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부서검토 : 교통정책과 의견제출(붙임)

라. 기 타 : 해당없음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주차장의 설치등)”을 “(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30대”를 “20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1대”를 “21대”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사항은”을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표시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감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부터 7급까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관용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도장애 이상의 환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의 회원,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의 회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국세·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납세자 차량이 성실납세자증 표시(스티커)부착 자동차(1년간 면제)
-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및 근로자 차량으로 무상사용증 제시 자동차(발급일로 부터 3년)

-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차량으로 무상사용증 제시 자동차 (발급일로 부터 3년)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 1년이상 다른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미시로 전입하는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1년간 면제)(최초 1회)
- 구미시 장학재단 고액기탁자(개인) 차량으로 무상사용증 제시 자동차 (1년간 면제)

별표 2 제2호 감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임산부 증명자료 제시: 산모수첩 및 신분증 등)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감면)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구미시 우수 자원 봉사자 카드를 소지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

별표 7 제5호의 설치기준란 단서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제4조의2 관련)

감면범위	감면대상	비 고
1. 주차요금의 전액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부터 7급까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5·18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관용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도장애 이상의 환자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국제·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납세자 차량이 성실납세자증 표시(스티커)부착 자동차(1년간 면제) ○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및 근로자 차량으로 무상사용증 제시 자동차(발급일로부터 3년) ○ 「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차량으로 무상사용증 제시 자동차(발급일로부터 3년)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 1년이상 다른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미시로 전입하는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1년간 면제)(최초 1회) ○ 구미시 장학재단 고액기탁자(개인) 차량으로 무상사용증 제시 자동차(1년간 면제) 	<p>관련 증명서 제시</p>
2. 주차요금의 50/10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임산부 증명자료 제시: 산모수첩 및 신분증 등)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감면)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구미시 우수 자원 봉사자 카드를 소지하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 	<p>관련 증명서 제시</p>
3. 1회 2시간 무료, 2시간 후 주차요금의 50/10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p>관련 증명서 제시</p>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시설면적/7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음식점과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의 경우에는 80㎡당 1대로 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이하:1대 - 시설면적150㎡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세대당(오피스텔은 호실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은 호실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으로 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30㎡미만은 0.7대 전용면적 30㎡ 이상은 0.9대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 당 10대(홀의 수 ×10), 골프연습장 : 1타석 당 1대(타석의수 ×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정원/15인),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주차장의 설치등) ① ~ ⑤ (생 략)</p> <p>⑥ <u>공영주차장(공공시설 부설주차장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경우 경차전용주차구획을 1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경차전용주차구획에 “경차전용”이라 표시하여 경형자동차 이외 차량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u></p>	<p>제8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① (생 략)</p> <p>②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주차대수의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p> <p>1. 주차대수가 <u>30대</u> 이하인 경우: 설치불가</p> <p>2. 주차대수가 <u>31대</u> 이상 300대 이하인 경우: 주차대수의 70퍼센트 이하</p> <p>3. (생 략)</p>	<p>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 -----</p> <p>1. ----- <u>20대</u> ----- -----</p> <p>2. ----- <u>21대</u> ----- ----- -----</p> <p>3. (현행과 같음)</p>

제17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유료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부설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표시에 관하여는 -----
-----.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제6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2. 일·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3.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4.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교통정책과

조 례 명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p><input type="checkbox"/>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6조▪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 제6조 <p><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영주차장의 경형자동차 설치 의무 삭제(안 제8조제6항 삭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개정(안 제14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범위 확대 신설(별표 2) <p><input type="checkbox"/>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형자동차 설치 의무를 삭제하여 다양해지는 전용주차구역으로부터 일반 차량의 주차권 보장○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주차공간 확보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구미시 인구정책에 맞게 주차요금 혜택을 확대하여 인구 유입 유도○ 장학재단 고액기탁자 감면 규정은 타 기부행위와의 형평성을 위해 조사 후 재검토 필요 <p><input type="checkbox"/>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영주차장 내 편의 증진• 건축행위시 좁은 부지 내 주차공간 확보 방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구미시로의 인구 유입 유도○ 소요예산 : 없음○ 문 제 점 : 다자녀 및 전입신고에 따른 증빙서류 지참 홍보 필요	

[별지 제2호서식]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는 재정수반 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 요인 없음

4. 작성자

-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 김영섭(6262)